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28 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정헌·허성무·박홍배

박민규 • 채현일 • 박지원

김승원 · 정동영 · 임호선

김영환 • 박용갑 • 황정아

강준현 · 김우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 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 조함.

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6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(이하 "인증기기등"이라 한다)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인증기기등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중앙행정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 기관
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기기등의 구매촉진 등을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6조제3항제12호의3을 제12호의5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제48조의6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	제48조의6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
에 관한 인증) ① ~ ⑥ (생	에 관한 인증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
	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 이
	경우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
	가 아니면 정보보호인증의 내
	용을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
	표시를 하거나 홍보하여서는
	<u>아니 된다.</u>
<u><신 설></u>	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
	<u>망연결기기등(이하 "인증기기</u>
	등"이라 한다)의 수요를 창출
	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
	정하는 기관에 인증기기등의
	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
	<u>청할 수 있다.</u>
	<u>1. 중앙행정기관</u>
	2. 지방자치단체
	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<신 설>

⑦ (생략)

제76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2. (생 략)

<신 설>

12의2. (생략)

12의3. (생략)

<u>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</u> · 준정부기관

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증기기등의 구매촉 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-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대하여 정보보호인증에 관련된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⑩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12의2.제48조의6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

12의3. (현행 제12호의2와 같음)

<u>12의5.</u> (현행 제12호의3과 같음)

13. ~ 25. (생 략)	13. ~ 2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